

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6. 23.
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. 5. 23. 김승수 의원 외 12인

나. 회부일자: 2023. 5. 25.

다. 상정일자: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(2023. 6. 13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: 김승수 의원

가. 제안이유

- 외부를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인 시각 기능과 의사소통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시청각장애인의 행복추구권 향상에 이바지하고, 나아가 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~제4조)
-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5조).
-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(안 제6조~제7조)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)

3. 검토보고 (장흥용 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은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, 권리를 보호하며,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안된 것으로,
 -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~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
 - 안 제3조~제4조에서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
 -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을
 - 안 제6조~제7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
 -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는 등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.
 -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면,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중복장애로서 의사 소통은 물론 자율적인 이동과 정보 접근이 어렵고, 교육기회도 제한받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.
 장애인복지법상 15개 장애 유형에 속하지 않고 단일 장애

(시각 또는 청각)와는 특성이 다른 중복장애로 인해 의사소통, 이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도움의 필요정도가 매우 높은 실정임.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.

- 시청각장애인은 단순한 중복이 아닌 전혀 다른 장애유형이며, 발견 즉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애가 더 심해져 시각과 청각장애 이외 정서장애, 인지장애 등의 2차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.
- 다만, 지원 대상의 범위를 심하지 않은 시청각장애인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지원 대상 시청각장애인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- 종합적으로, 본 조례안은 입법취지 및 필요성에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,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제도적으로 소외된 시청각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및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- 단,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관내 시청각장애인의 실태 및 욕구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, 나아가서는 시청각장애인의 욕구 파악에 따른 서비스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.

참고 자료

1. 관련법령

장애인복지법

제22조(정보에의 접근)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(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, 음성도서,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·보급하고,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·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·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·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35조(장애 유형·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·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·의사소통·보행·이동 훈련, 심리상담, 문화·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·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·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2. 마포구 시청각장애인 현황

주장애	부장애	심한장애		심하지 않은 장애	
		남	여	남	여
계		13	10	24	9
시각	청각	7	7	4	3
청각	시각	6	3	20	6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